

울산지방법원 2022. 11. 11 선고 2021가단1107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2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651㎡ 중,
가.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(주택) 60.5㎡를 철거하고,
나.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지상 컨테이너를 철거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경주시 C 전 651㎡를 인도하고,
나. 1,530,000원 및 2022. 8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8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1. 6. 17. 경주시 C 전 65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5. 17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, ①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 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(주택) 60.5㎡와, ②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으면서,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토지 중, ①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(주택) 60.5㎡ 및 ②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지상 컨테이너를 각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그리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없이 사용수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1. 7. 1.부터 2021. 12. 31.까지의 차임은 월 127,000원 상당이고, 2022. 1. 1.부터 2022. 7. 31.까지의 차임은 월 128,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고,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,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21. 6. 17. 이후로서 원고가

구하는 2021. 1. 1.부터 2022. 7. 31.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

1,658,000원[$= (127,000\text{원} \times 6) + (128,000\text{원} \times 7)$] 중 원고가 구하는 1,530,000원 및 2022. 8.

1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8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

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흥

별지

도면



